



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정(안) 국무회의 통과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2년 1월 31일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(안)이 입법예고,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함.

- 동 국무회의 통과(안)은 입법예고(안)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협의,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, 2012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.
- 일부 전문가들은 동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재권한이 약화되는 등 당초 입법예고(안)보다 후퇴하였다고 우려함.

■ 금번 국무회의 통과(안)은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하여 등록규제, 과징금 부과기준, 제재수준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됨.

- 입법예고(안)에서는 기존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에 대해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, 국무회의 통과(안)에서는 이중등록규제 우려에 따라 등록간주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직접 포함함.
- 또한, 입법예고(안)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, 국무회의 통과(안)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30%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함.
 - 금융위는 국무회의 통과(안)의 과징금 배율이 입법예고(안)과 비교하여 축소되었으나, 기준이 이익의 개념에서 수입의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수준은 유사하다고 밝힘.
- 한편, 제재수준과 관련하여 입법예고(안)의 ‘형벌·과징금 병과’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형벌 부과 시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과징금 부과로 일원화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기로 함.
 - 또한, 입법예고(안)의 형벌과 과태료의 경우 위반행위의 범죄성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병과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로 일원화함.

〈표 1〉 제재수준 조정

판매규제	입법예고(안)		국무회의 통과(안)	
	법인	개인	직판/자문	대리·중개
부당권유행위금지(§ 17)	형벌·과징금 병과	형벌	과징금	과태료
광고준수사항(§ 18③,④)	형벌·과징금 병과	형벌·과태료 병과	과징금	과태료
미등록자 위탁금지(§ 20)	형벌·과징금 병과	형벌	형벌	형벌

(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, 금융위, 1/31)